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2026. 2.

인 사 혁 신 처
[균 형 인 사 과]

목 차

Ⅰ. 시험 개요 및 학교 요청사항 ····· 1

Ⅱ. 선발 규모 ····· 2

Ⅲ. 학교의 추천 ····· 2

Ⅳ. 시험일정 및 방법 ····· 12

Ⅴ.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안내 ····· 15

Ⅵ.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 17

[붙임]

1.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20

2.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 22

3.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 23

4.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지원자 필수 자격증 ····· 25

5. 행정·세무·관세 직렬 유관/가산대상 자격증 ····· 25

6. 공업·농업·시설 등 직렬 유관/가산대상 자격증 ····· 25

[참고]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 29

Ⅰ 시험 개요 및 학교 요청사항

1 추진 배경

○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교(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의 우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임

○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선발절차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수습근무(6개월) ▸ 임용여부 심사 ▸ 임용결정 시 일반직 9급 공무원 임용

3 수습근무

○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됨

○ 수습근무 기간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일반직 9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

4 학교에 대한 요청사항

○ 추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모집 공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주시고, **공정한 추천 절차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5, 8374)

Ⅱ 선발 규모

1 선발예정직렬(직류)와 선발인원 : 총 260명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208명)	행정	일반행정	121명	전 중앙행정기관
		회계	2명	교육부
	세무	세무	55명	국세청
	관세	관세	30명	관세청
과학 기술 (52명)	공업	일반기계	10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1명	행정안전부
		화공	1명	산업통상부
	시설	건축	6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3명	국가데이터처
	임업	산림자원	2명	산림청
	환경	일반환경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	보건	3명	질병관리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식품위생	식품위생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	선박항해 ※자격증 필수	2명	해양수산부
		선박기관 ※자격증 필수	2명	
		해양교통시설	4명	
	전산	전산개발	11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2명	국세청
	방송통신	전송기술	2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Ⅲ 학교의 추천

1 추천 학교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행정·과학기술직군(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 "전문대학교" 라고 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구 분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기술)학교		전국 지역인재 9급(행정·과학기술직군)
전문대학교 등	전문학사학위 과정	전국 지역인재 9급(과학기술직군)
	학사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등)	전국 지역인재 7급

(2) 추천지역

○ 추천학교의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추천지역으로 함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과 응시자는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공고된 매뉴얼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유의사항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6.12.4.인 경우 2025.12.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교는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 유의사항

▸ 수습시작(2027년 상반기 예정) 전까지 졸업(전문학사학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2) 학과성적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이내인 사람

⇨ ① + ② +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졸업자는 전 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을 대상으로 함**

▸ 첨부파일의 "학과성적 계산(고등학교)" 엑셀 파일을 활용하되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랍니다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과목별 단위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 교양 교과(군) 등)은 **제외**

- 다만, **보통교과 전과목의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는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 교양 교과(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에 대해 다음 방법에 따라 **석차 등급을 변환하여 산출**

〈보통교과 전과목 석차등급 미산출의 경우 석차등급 변환 방법〉

[대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0항 등에 근거하여 보통교과 전과목의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보통교과 과목별 석차등급 산출 방법]

① 표준점수(Z) = $\frac{(\text{원점수} - \text{과목평균})}{(\text{표준편차})}$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원점수 96, 과목평균 79.4, 표준편차19.8 → 표준점수(Z) 0.84, 석차등급 3등급

② 표준점수별(Z) 석차등급

표준점수(Z)	1.76 이상	1.23~ 1.75	0.74~ 1.22	0.26~ 0.73	-0.25~ 0.25	-0.73~ -0.26	-1.22~ -0.74	-1.75~ -1.23	-1.76 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주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하고 변환해야 함

*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 교양 교과(군) 등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석차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30%이내인 사람

☑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
▸ 각 학과(전공) 단위로 성적산출, 다만 학과(전공)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과의 최상위자(1등)를 추천

(3)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 **(고등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기준

○ **(전문대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야 함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행정	행정	일반행정	경영·금융 교과(군)	해당 없음
		회계		
	세무	세무		
	관세	관세		
과학기술	공업	일반기계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선발직류 관련 학과
		전기	전기·전자 교과(군)	
		화공	화학공업 교과(군)	
	시설	건축	건설 교과(군)	
	농업	일반농업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임업	산림자원		
	환경	일반환경	화학공업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환경 관련 과목	
	보건	보건	보건·복지 교과(군)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가공 교과(군)	
	해양수산	선박항해 **※자격증 필수**	선박운항 교과(군)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기관 **※자격증 필수**		
		해양교통시설		
	전산	전산개발	정보·통신 교과(군)	
		데이터		
	방송통신	전송기술		

※ 예) 일반기계 직류는 ① 기계 교과(군)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② 재료 교과(군)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③ 기계 교과(군)와 재료 교과(군)을 합하여 50% 이상 이수한 경우 응시 가능

※ 해양수산 직렬도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 단, 해양수산 직렬 중 농림·수산해양 교과(군)의 경우 수산해양 관련 과목만 관련 전문교과로 인정

☑ 유의사항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은 [붙임 4]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응시가능(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
·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6.9.23.)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6.9.23.) 현재 자격증 취득요건 중 연령요건(18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응시가능 -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기간(2026. 9. 23.~9. 30.)에 증빙서류(11쪽 참고)를 제출해야 하며, 2027년 수습근무 종료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붙임5~6]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수 있음 ※ [붙임5~6]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6.7.27.~7.31)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추천 대상자가 이수한 교과목이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17개 교과(군) 분류에 따름** 예 A과목이 교육과정 총론에 B교과(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A과목을 B교과(군)이 아닌 다른 교과(군)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헌법, 행정학 등)과 전문교과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NEIS 성적증명서의 교과(군)으로 인정 예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경우, NEIS 성적증명서에 "경영·금융" 교과(군)에 속할 경우 "경영·금융" 교과로, "기계" 교과(군)에 속할 경우 "기계" 교과로 인정

(4)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2009.12.31. 이전 출생자)

(5)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추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추천 가능 인원

○ 학교의 장은 최대 9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

4 추천 대상자 선발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개최하여 추천심사회의 참석자가 자의적 해석이나 개인 선호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

- 추천기준 및 추천절차 마련, 추천대상자 결정 등 역할 수행
- 객관적·명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추천자 선정
- 정확한 비교집단 범위 확정 및 성적 산출
- 가급적 졸업예정자 위주로 추천할 것을 권장
-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결사항 기록 관리

○ 학교에서는 회의 의결을 통해 학과성적 외에도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 설정이 가능함

《 평가기준 예시 》

· (성실성) 생활기록부 상 출결상황(미인정 지각·조퇴·결과·결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규칙준수)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행위·학교규칙 위반 등에 따른 징계·조치 사항 등
· (기타)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 단, 평가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외에도 추천 절차 등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 유의사항

▸ **추천 지원자가 학교추천 가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지원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 추천에 관련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기본정보(성적 등)를 입력하여 추천대상자를 등록한 후, 추천대상자(응시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면 최종적으로 원서접수가 완료됨

※ (유의) 2025년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으로 변경됨**

※ (참고)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절차 안내

(1) 원서접수 기간 : 2026. 7. 27.(월) 09:00 ~ 7. 31.(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 8. 3.(월) 18:00 까지 / 응시표 출력: 8. 21.(금)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 진행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공개경쟁채용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전국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원서접수 취소 : 2026. 8. 3.(월) 18:00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환불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추가 취소 기간(2026.8.17.(월) 09:00~ 8.19.(수) 18:00)**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응시표 출력 : 2026. 8. 21.(금)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원서접수 > 원서접수내역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현황 등과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43쪽 참고)

(2)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6. 7. 27.(월) ~ 7. 31.(금)

○ 학교의 장은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현황(붙임 1)'**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 가능 (2026. 7. 31.(금)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전국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3) (필기시험 합격자) 추천서류 제출 : 2026. 9. 23.(수) ~ 9. 30.(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 가능 (2026. 9. 30.(수)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전국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 소속 학교에서는 추천서,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성적증명서 등을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추천 대상자별 제출서류는 합격자별로 번호 순서대로 스캔(파일형식pdf)하여 파일 첨부**
  ※ 파일명 : 추천직렬(직류) - 이름 예 행정(일반행정) - 홍길동
- 전자문서 송부시 용량이 커서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공문 송부 가능

제출서류		제출 방법	내용
개인별 1부	①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전자문서	■ 고등학교: 붙임 2-1 전문대학교: 붙임 2-2
	②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 붙임 3 (고등학교만 해당)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50% 미만 이수자로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자는 생략
	③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는 NEIS상의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교의 경우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④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대체 가능
	⑤ 자격증 사본		■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붙임4, 5, 6 참고) ①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필수 자격증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의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증빙자료 및 교육수료증서(승선실습증명서) ②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③ 가산대상 자격증

Ⅳ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6. 8. 21.(금)	2026. 8. 29.(토)	2026. 9. 23.(수)
서류전형	-	-	2026. 11. 20.(금)
면접시험	2026. 11. 20.(금)	2026. 12. 2(수) ~ 12. 4(금)	2026. 12. 24.(목)

2 시험 단계

(1) 필기시험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점	배정시간
국어, 영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총70분

- **2025년부터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되어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3과목 60분에서 70분으로 변경(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동 시험 관련 필기시험 기출문제는「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시험문제/정답」-「문제/정답 안내」에 공개되어 있음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결정

(3)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해 4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평정요소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3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1)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2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과학기술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 이하인 경우
㉯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3)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 유관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5~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6.7.27.~7.31)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 적용 관련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 유관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5~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은 공고문 [붙임 5~6]에서 제시한 자격증에 한해서만 인정

예 전산회계 1·2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인정 안됨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1급·2급·3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예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개수는 1개임

예 전산회계운용사 2급과 전산회계운용사 3급을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개수는 1개임

예 자동차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정비기능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개수는 2개임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응시를 위해 취득한 필수 자격증은 가산대상이 아니며 필수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6.9.23.) 현재 유효(취득)하여야 함.(6쪽 참고)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발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아님

예 경영·금융교과(군) 전문교과 이수비율이 50% 미만인 자가 전산회계운용사 3급을 취득하여 행정(회계) 직렬에 응시한 경우 가점 적용대상 아님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6.7.27.~7.31.) 현재 유효(취득)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4)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공고

V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안내

1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 수습직원은 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수습근무 기간 중에는 배정된 수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됨

2 수습직원의 보수

○ 수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인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됨.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이 호봉에 반영됨

3 수습직원 직무교육

○ 수습직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6개월간 수습근무를 하게 되며, 각 부처에 배치되기 전에 공직 적응을 위한 기본소양 및 직무수행 관련 기본교육을 받게 됨(기본교육 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

4 수습직원 수습기관 배정

○ 중앙행정기관의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배정

○ 배정받은 부처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근무할 수 있음(추천지역과는 관계없음)

5 수습근무 및 평가

○ 수습직원은 수습기관에 배치된 이후 소속장관으로부터 담당할 업무와 수행할 과제를 부여받음

○ 수습직원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수습종료 40일 전에 평가를 받게 되며, 이때의 평가 결과는 6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됨

6 수습유예 및 정지

○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7 수습직원의 자격취소

○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에게 공직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음

○ 수습근무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수습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습근무 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습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함

8 공무원 임용

○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직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됨
즉, 수습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최종 결정됨에 유의

○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결정된 수습직원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은 면제됨

VI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1 편의제공 대상

○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제공 신청 절차

(원서접수)		(증빙 제출)		(제공여부 안내)
추천대상자(응시자) 해당 편의제공 작성	→	의사진단서 제출 ※ 제출처 별도 안내	→	증빙서류 확인후 추천대상자(응시자) 안내

3 유의사항

○ [참고 1·2]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5, 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참고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참고 1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필기시험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각1부)	비고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장애	공통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	기존 1~2급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기존 4,5급 1호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기존 5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임신부		·높낮이조절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중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원본)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참고 2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면접시험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하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면접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청각장애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시간 1.5배 연장
기타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 경험·상황면접과제 작성 시간 1.5배 연장, 개인발표과제 검토 시간 1.5배 연장, 면접시간 1.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소견서 불인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증빙서류와 함께 **진단서 원본 제출**

* 면접시간 연장은 뇌병변 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중 편의제공 사전신청자에 한정

[붙임 1-1]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고등학교, 작성예시)

1. 학교명 : ○○학교(광역자치단체 : ○○)

2. 직렬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직군	합계	행정				과학기술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시설	농업	임업	환경	보건	식품위생	해양수산			전산		방송통신
직류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기계	전기	화공	건축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환경	보건	식품위생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전산개발	데이터	전송기술
지원자수	0	0				0				0								0		
추천자수	0	0				0				0								0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9명 이내)

추천 직렬 (직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과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				성적			졸업 (예정)일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00 (00)	홍길동 (00.00.00.)	남	0000	관련 전문교과(군)	00교과	자격종목 및 등급	00 기능사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0.0	0000.00
				이수 비율	48.5%			전문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해당 여부	해당	
									성취도 A 비율	00.0%	

* 관련 전문교과(군) 이수 비율은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총 전문교과 이수단위 중에 관련 전문교과(군) 이수단위 수를 나눈 값을 기재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50% 미만) 경우, 반드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에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의 경우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모두 기재하여야 함

4.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의장	김○○	○○고등학교 교장	2026. . .
	이○○	○○고등학교 ○○부장	
	박○○	○○고등학교 교사	

[붙임 1-2]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전문대학, 작성예시)

1. 학교명 : ○○대학교(광역자치단체 : ○○)

2. 직렬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직군	합계	행정				과학기술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시설	농업	임업	환경	보건	식품위생	해양수산			전산		방송통신
직류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기계	전기	화공	건축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환경	보건	식품위생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전산개발	데이터	전송기술
지원자수	0					0				0								0		
추천자수	0					0				0								0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9명 이내)

추천 직렬 (직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공학과	관련 학과 요건			학과성적		이수학점			졸업 (예정)일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학과 전공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졸업 (예정) 석차	석차 비율	이수 학점	졸업 학점	이수 비율	
00 (00)	홍길동 (00.00.00.)	남	000학과	[ ] 해당 [v] 미해당	자격종목 및 등급	000 산업기사	0/00	00.0	00	000	00.0	0000.00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에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의 경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전공 해당 여부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모두 기재하여야 함

4.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의장	김○○	○○대학교 총장	2026. . .
	이○○	○○대학교 학사처장	
	박○○	○○대학교 교수	

[붙임 2-1]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고등학교, 작성예시)

선발연도	2026	추천직렬(직류)	00(00)	광역자치단체	00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	00고등학교		
		학교주소	00시 000		
	담당자	성명	박00	직장전화번호	000) 000-000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인00	성명(한자)	000
		생년월일	00.00.00.		
		주소	000도 00구 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자택전화번호	000) 000-0000
		전자우편주소	000000000@0000000		
	전공 · 성적	학과명	000학과	(선발예정직류 관련 전문교과명 : 00 · 00 교과(군))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 0. 0 등급		
		전문 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v] 해당 [ ] 미해당	성취도 A 과목 비율 : 00.0 %	
		졸업 여부	[ ] 졸업자 [v] 졸업예정자	졸업(예정) 시기	0000 년 00 월
	전문교과 이수 요건	관련 전문교과 50% 이상 이수	[v] 해당 (전문교과 이수 단위 및 비율 : (00)단위/(00)단위 00.0 %) [ ] 미해당(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가산 자격증 (전문교과 이수 시)	자격종목 및 등급	00000 0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000000 / 0000.00.00.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6 년 00 월 0 일

학교명 00 고등학교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2. 성적증명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10㎜×297㎜[백상지 80g/㎡]

[붙임 2-2]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전문대학, 작성예시)

선발연도	2026	추천직렬(직류)	00(00)	광역자치단체	00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	00대학		
		학교주소	00시 000		
	담당자	성명	박00	직장전화번호	000) 000-000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사00	성명(한자)	000
		생년월일	00.00.00.		
		주소	000도 00구 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자택전화번호	000) 000-0000
		전자우편주소	000000000@0000000		
	전공 · 성적	학과명	000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 : 00 계열)	
		졸업 여부	[ ] 졸업자 [v]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비율(%)	00.0 % (이수학점 00 학점 / 졸업학점 000 학점)		
		졸업(예정) 시기	0000 년 00 월	석차비율	00.0 % (0 등 / 총 00 명)
	관련 학과 요건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전공	[ ] 해당 [v] 미해당(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자격종목 및 등급	000 산업기사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000000 / 0000.00.00.
	가산 자격증 (관련 학과 해당 시)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6 년 0 0 월 0 일

학교명 00 대학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고등학교, 작성예시)

선발연도	2026	추천직렬(직류)	00(0000)	광역자치단체	00

추천 대상	기본 사항	학교명 00 고등학교	성명 인00
		학과명 00 학과	졸업(예정)일 0000.00.
	담당자	성명 박00	직장전화번호 000) 000-0000

추천 자격 확인	추천 요건	추천시점 기준으로 추천직류와 관련 있는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한 자 (추천직류 관련 전문교과는 공고문 참조)			
	이수 단위 비율	**① (00) 교과(군)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수** / ②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수 × 100 = (86)단위 / (93)단위 × 100 = (92.5)%			
	③ 관련 전문 교과목	과목명	단위수	과목명	단위수
		0000	4		
		0000	4		
		0000	6		
		0000	6		
		0000	10		
		0000	10		
		0000	10		
		0000	12		
		0000	12		
		0000	12		
		합 계			86

위 사람은 추천 직렬(직류)와 관련된 (00) 교과(군)의 전문교과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0 월 0 일

학교명 00 고등학교

인사혁신처장 귀하

유의사항

①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 추천 직렬(직류)별 공고된 관련 교과(군)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를 기재

②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 단위수를 기재하고,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를 기재

③ 관련 전문 교과목 : 추천 직렬(직류)별로 공고된 관련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과목명 및 단위수를 기재하고 학기별 중복된 과목은 통합하여 기재

예) 2학년1학기 식품분석 3단위 / 2학년 2학기 식품분석 3단위일 경우 식품분석 6단위를 기재

[붙임 4]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지원자 필수 자격증

직렬	직류	자격증 구분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 : 조선 기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지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붙임 5] 행정·세무·관세 직렬(직류) 유관 /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 세무 관세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1급, 2급, 3급 전산회계운용사	

※ 행정·세무·관세 직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발췌

[붙임 6] 공업·농업·시설 등 직렬(직류) 유관 /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임업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전산	전산개발 데이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송통신	전송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참고]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 공개경쟁채용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전국 지역인재 선발시험

※ 아래의 원서접수 화면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실제 원서접수 시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담당자 원서접수 절차

1 학교 담당자 접수 화면

※ 학교 담당자는 원서접수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개경쟁채용 클릭 > 로그인(https://gongmuwon.gosi.kr)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배너(**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클릭

○ 안내사항 확인 후 응시원서 제출 클릭

○ 지역인재 학교 담당자 배너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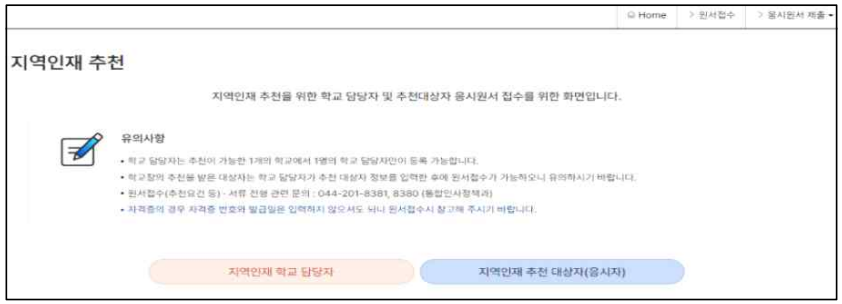

2 학교담당자 정보 등록 화면

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이후 학교 담당자 실명 인증

○ 추천 가능한 1개의 학교당 1명의 담당자만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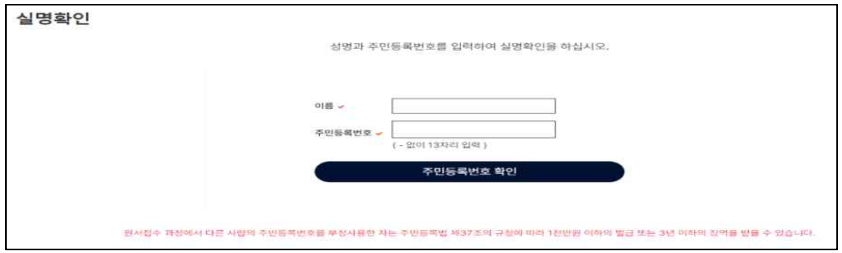

② 학교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고등학교>

○ 학교 코드에 NEIS상의 학교 코드 기재**(영어1자리+숫자9자리)**

○ 코드 입력 시 학교명은 자동 기입되며, **담당자의 정보(부서명,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직접 입력**

<전문대학>

○ 학교 코드에 표준분류조사를 위한 **정보공시 코드(본교) 입력(7자리 숫자)**

○ 코드 입력 시 학교명은 자동 기입되며, **담당자의 정보(부서명,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직접 입력**

3 추천 대상자 등록 및 관리 화면

① 추천 대상자 등록

○ 추천 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추천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추천 대상자 정보 입력**

② 추천 대상자 정보 입력(지역 및 지원 직렬(직류) · 추천요건)

<공 통>

○ 추천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실명인증 필요)

○ 지 역

- **학교 소재지의 지역**을 선택(추천 대상자의 실거주지 지역이 아님에 유의)

○ 추천직렬(직류) : 추천하고자 하는 직렬(직류) 선택

<고등학교>

○ **(학과)** 추천 대상자의 전공학과 입력

○ **(졸업(예정)연도)** 졸업 및 졸업예정 중 1가지 선택 후 졸업(예정)연도 입력

○ **(성적 요건)**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및 전문교과 성취도 성적 부분 기재

○ **(추천 요건) “지원 직렬(직류) 관련 교과목 50% 이상 이수자”** 및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1가지 선택

- **(지원 직렬(직류) 관련 교과목 50% 이상 이수자 선택)** 지원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수 및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수 입력 후 비율의 50% 이상 여부 확인(자동계산)
-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선택)** 지원 직렬(직류) 관련 취득한 자격증 선택 (가산점 미부여)

<지원 직렬(직류) 관련 교과목 50% 이상 이수자 선택 시 예시 화면>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선택 시 예시 화면>

<전문대학>

○ **(학과)** 추천 대상자의 전공학과 입력

○ **(졸업(예정)연도)** 졸업 및 졸업예정 중 1가지 선택 후 졸업(예정)연도 입력

○ **(성적 요건)** 졸업(예정) 석차비율 및 이수학점 비율 기재

○ **(추천 요건)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및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1가지 선택

-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선택)**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여부 확인
-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선택)** 지원 직렬(직류) 관련 취득한 자격증 선택 (가산점 미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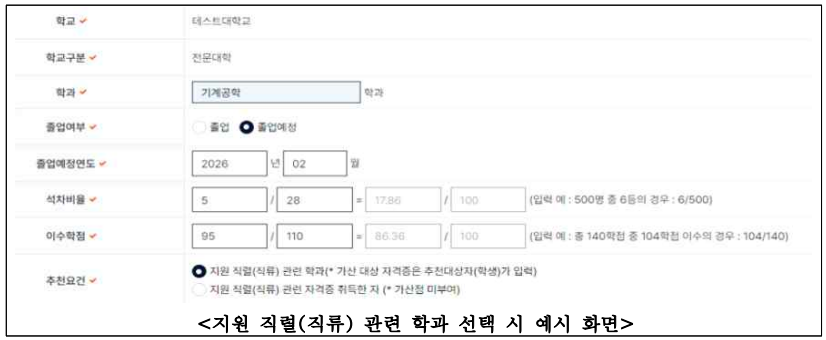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선택 시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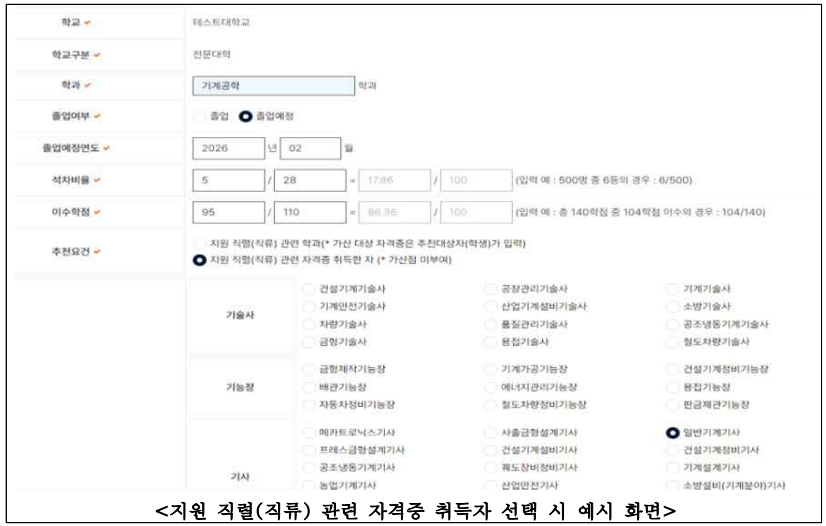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선택 시 예시 화면>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추천 대상자>

ㅇ 해당 직렬 선택시 **추천 요건은 자동 선택**되며,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전문대학은 미해당) 및 관련 자격증 선택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추천 대상자는 관련 교과목을 50%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추천 가능**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취득)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당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예정" 을 선택하여야 함**(6쪽 참고)

<해양수산직렬 선택 시 고등학교 예시 화면 >

<해양수산 직렬 선택 시 전문대학 예시 화면 >

③ 추천 대상자 관리

ㅇ 대상자별로 등록이 완료되면 **관리화면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제 및 접수를 완료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

- **추천 대상자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응시자가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변경*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2026.7.27. ~ 7.31.)**

추천 대상자(응시자) 원서접수 절차

1 추천 대상자(응시자) 접수 화면

※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원서접수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개경쟁채용 클릭 > 로그인(https://gongmuwon.gosi.kr)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배너(**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클릭

○ 안내사항 확인 후 응시원서 제출 클릭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로그인 후 지역인재 추천 대상자(응시자) 배너 클릭

-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추천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였는지 확인 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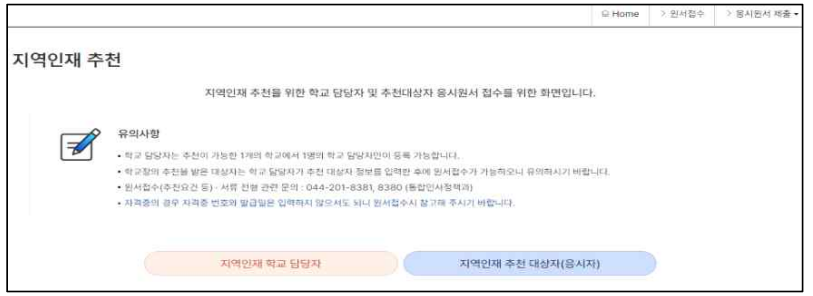

2 추천 대상자(응시자) 정보 등록 화면

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이후 추천 대상자(응시자) 실명 인증

○ 학교 담당자가 원서접수 기간에 입력한 추천 대상자 정보(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한 경우에만 원서접수 화면으로 이동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되었음에도 원서접수 화면으로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였는지 확인 필요**

② 추천 대상자(응시자) 개인정보 등 입력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 등록

- 사진 등록 시에는 JPG 형식의 파일 필요(해상도 137*177픽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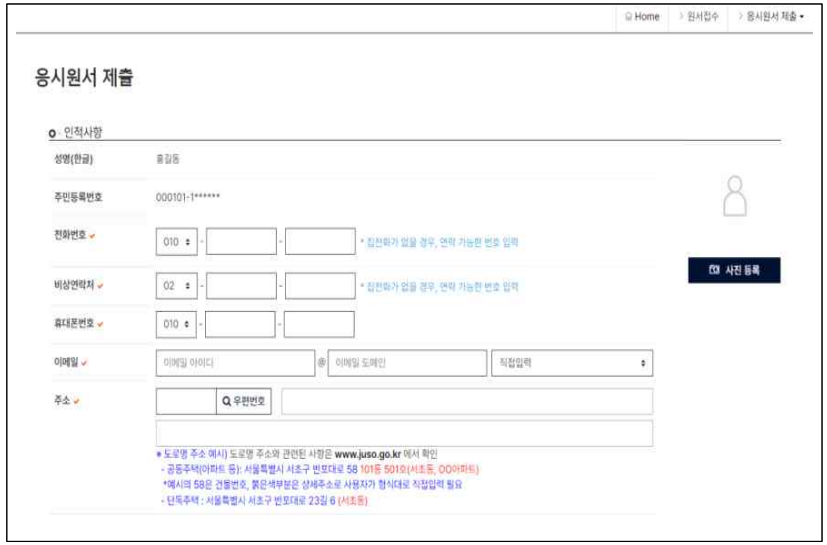

③ 학력 사항(지원직렬(직류), 추천요건, 성적요건 등) 확인

<고등학교>

○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지원 직렬(직류) 및 추천 요건, 성적 요건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학교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 기입되며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 **(지원 직렬(직류) 관련 교과목 50% 이상 이수자)**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지원 직렬(직류) 및 추천 요건, 성적 요건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추천 요건 및 지원 직렬(직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지원 직렬(직류) 관련 교과목 50% 이상 이수자 예시 화면>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예시 화면>

<전문대학>

○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지원 직렬(직류) 및 추천 요건, 성적 요건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학교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 기입되며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추천 대상자(응시자)는 지원 직렬(직류) 및 추천 요건, 성적 요건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추천 대상자는 추천 요건 및 지원 직렬(직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지원 직렬(직류) 관련 학과 예시 화면>

<지원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예시 화면>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추천 대상자>

○ 학교 담당자가 입력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전문대학은 미해당) 및 관련 자격증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추천 대상자는 **관련 교과목 50% 이상을 이수(전문대학교는 관련 학과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추천 가능**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취득)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당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예정" 을 선택하여야 함**(6쪽 참고)

<해양수산 직렬 고등학교 예시 화면 >

<해양수산 직렬 전문대학 예시 화면 >

④ 가산점 적용 자격증 입력 〈공통〉

○ 추천 대상자가 취득한 가산 자격증을 선택

- (행정분야) 1개의 자격증만 가산점 적용(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중 1개, 최대 2% 적용)
- (과학기술분야) 최대 2개 자격증까지 가산점 적용 가능(최대 4% 적용)

※ [붙임 5~6]의 직렬(직류) 유관/ 가산대상 자격증 참고

※ 원서접수 시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가산자격증 입력 예시 화면>

⑤ 편의 지원

○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본인 해당 시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증빙서류는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1차, 2차 취소기간 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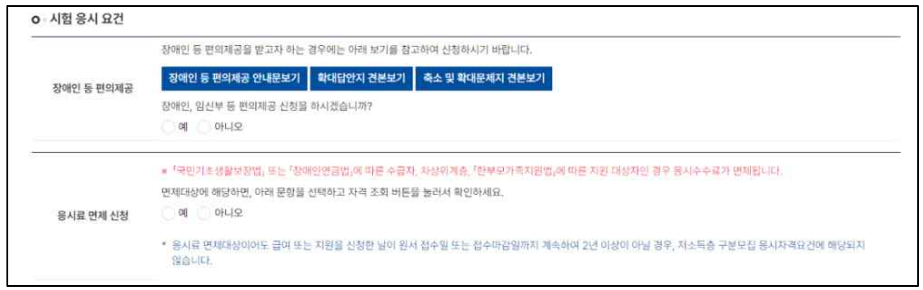

3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5,000원)+결제대행수수료**

① 휴대폰 결제 : 팝업창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 이동통신사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약관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한 다음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

② 신용카드 결제 : 카드선택, 할부기간을 입력 후 해당 카드사 결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결제절차에 따라 수수료 결제

③ 계좌이체 : 이용하실 은행사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와 결제내역 통보를 위한 이메일 주소 입력

4 원서접수 내역 확인, 취소 및 환불 등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에서 원서접수내역, 응시료 결제내역 등 조회 가능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 원서접수 > 원서접수내역에서 접수 취소를 누르면 환불됨

※ 원서접수 취소기한 : 2026. 8. 3.(월) 18:00까지

※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환불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추가 취소 기간(2026.8.17.(월) 09:00~8.19.(수) 18:00)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 안내

- 응시표는 2026.8.21.(금) 09:00 이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공개경쟁채용 > 원서접수 > 원서접수내역 > 응시표 출력에서 추천 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출력